

# 2016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를 찾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땀흘려 일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 간부를 찾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대해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 ◆ 포상대상

대상	신청(추천)요건(2015.12.31.현재) 및 주요 심사지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li> <li>-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친절 봉사 등 고객만족도 제고 실적</li> <li>-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노동시장 개혁 실천 및 확산 노력 등에 기여한 정도</li> <li>- 노사관계제도 등 현장정착을 위한 참여 및 기여한 정도</li> <li>-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li> <li>-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참여 및 기여한 정도</li> <li>-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참여 및 기여한 정도</li> <li>- 사회공헌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li> </ul>
노조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li> <li>-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친절 봉사 등 고객만족도 제고 실적</li> <li>-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노사관계제도 현장정착, 일터혁신 등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및 노동시장 개혁 실천 및 확산 노력</li> <li>-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li> <li>-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추진 실적</li> <li>-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외국인투자 유치 등 일자리창출 기여 실적</li> <li>- 현장근로자의 고충상담, 처리 등 근로자 보호에 노력한 실적</li> <li>- 산업재해예방 등 제도발전 기여실적</li> <li>-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등 사회적 책임 확산 실적 및 사회공헌도 등</li> </ul>

- ◆ **포상내용:**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공적기간(재직기간) 최저 요건: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 ◆ **신청(추천)서류:** 신청(추천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 **접수기간:** 2016.1.11.(월) ~ 2016.2.2(화)
- ◆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국민추천제:**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며, 노동시장 개혁 및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 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추천 또는 소속직원 추천 지양).

※ 접수처는 노사상생+(플러스)홈페이지([www.nosawinwin.or.kr](http://www.nosawinwin.or.kr))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추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주소:

담당자: ○ ○ ○(전화: 000-000-000, 이메일: )

◆ 추진일정

-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6년 3월에 포상대상자 및 훈격 확정
- 포상수여는 2016 4월 말 예정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016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계획과 신청(추천)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http://www.moel.go.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8),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연락처>

<b>서울지방고용노동청</b>	근로개선지도4과	02-2250-5838	<b>부산지방고용노동청</b>	근로개선지도1과	051-850-6373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465-8417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1-559-6625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142-8838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1-309-1533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077-6139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5-239-6545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2639-2252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2-228-1870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950-9814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5-370-0974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2-3282-9033	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760-6507
<b>충북지방고용노동청</b>	근로개선지도1과	032-460-4572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16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540-7960	<b>대구지방고용노동청</b>	근로개선지도1과	053-667-6278
부천시청	근로개선지도1과	032-714-8746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3-605-9059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50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4-271-6808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931-2820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54-450-3521
<b>경기지청(대표지청)</b>	근로개선지도1과	031-259-0382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54-639-1156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788-1536	안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54-851-8035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63-7334	<b>광주지방고용노동청</b>	근로개선지도1과	062-975-6307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31-412-1906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63-240-3380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48	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839-0022
<b>강원지청(대표지청)</b>	근로개선지도과	033-269-3573	군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3-450-0587
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650-2512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280-0138
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769-0808	여수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61-650-0125
태백지청	근로개선지도팀	033-550-8623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개선지도과	064-728-6118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033-371-6231	<b>대전지방고용노동청</b>	근로개선지도1과	042-480-6257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3-299-1162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41-560-2885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3-840-4058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41-930-6123

# 2016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

2016. 1.

## 2016년도 포상계획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중 점 포상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의 자세로 창의적이며, 성실하게 일하는 현장근로자 위주로 포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관서의 적극 발굴을 통한 일자리 현장의 숨은 유공자 발굴·포상</li> </ul>
포상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명</li> <li>* 정부포상 규모를 전년수준으로 유지</li> <li>*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청소년: 8개 청·대표지청</li> <li>· 해외근무자: 10개 기관</li> <li>· 지역연합단체 노조간부: 지방관서</li> <li>· 공무원: 16개 시도별 각 1명(전년 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211명</li> </ul>
추천제한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불사업주,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대표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li> <li>*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li> <li>*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대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노동정책을 위반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을 통해 정부 포상의 영예성·신뢰도 제고</li> </ul>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와 노조간부 세부심사지표 운영</li> <li>▪ 주요 심사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개혁 실천 및 확산</li> <li>*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반성장)</li> <li>*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li> <li>* 임금피크제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li> <li>*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등</li> <li>*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li> <li>* 품질개선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li> <li>*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의 효율적 지원 및 심사 기준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정부 포상의 내실화</li> </ul>
포 상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포상 신청자격 확인절차 강화</li> <li>▪ 국민추천포상제 홍보 및 활용</li> <li>*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및 민간단체 참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추천포상제 활성화</li> </ul>

# 목 차

I. 목 적	1
II. 그간의 경과	1
III. 2016년도 포상개요	1
IV. 포상기준·자격 및 심사기준	3
V. 포상대상자 추천	10
VI.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	15
VII. 향후 추진일정	16
※ 붙임: 1. 근로자의 날 유공자 심사기준(근로자, 노조간부)	17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한 규정 등	19
3.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21
4. 국민추천서 작성요령	36
5. 정부포상 신청자격 확인결과(양식)	37
6.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본방침	38

## I. 목적

- 상생·협력의 자세로 일자리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우리사회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
  -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며 상생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고 근로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II. 그간의 경과

- 1975년부터 매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총 16,484명을 포상**

계	훈 장					포상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16,484명	34	105	171	244	370	988	2,676	3,283	8,613

- 2015년에는 총 211명을 포상

계	훈 장 (17)					포상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211명	1	3	4	4	5	17	53	56	68

\* 근로자(161명, 76.3%), 노조간부(30명, 14.2%), 근로청소년(3명, 1.4%), 공무원(5명, 2.4%), 노사관계발전유공자(7명, 3.3%), 해외근무자(5명, 2.4%)

## III. 2016년도 포상개요

### 【 운영 방향 】

- ◆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노동개혁 현장 실천 등 유공자 적극 발굴, 포상
- ◆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관련 유공자 등 우대
- ◆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및 지역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책임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

## 1. 포상대상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해 온 근로자 위주로 포상
  - \*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발굴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을 통해 성실한 일반근로자를 상위 순위로 적극 추천
- 국내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노조간부
  - \* 근로자는 근로자·근로청소년, 공무원으로 세분
  - \* 여성·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공적심사 시 가점부여
-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국위선양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근로자
- 노사관계발전에 기여한 학계·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등
  - \* 노사단체 간부 등 노동관계발전 유공자 포함

## 2.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규모는 전년수준으로 유지
- 최종 포상인원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 < '16년도 포상규모(안) >

(단위: 점)

구분	계	훈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표창
'16년	211	17	17	53	56	68
'15년	211	17	17	53	56	68

## 3. 포상수여: '16. 4월말 시상

## IV. 포상기준·자격 및 심사기준

### 1. 심사기준(붙임 참조)

- 관련 근거: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훈령)
- 공적심사 시 주요 심사지표
  -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적용 등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개혁을 실천·확산 기여 실적
  -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친절봉사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기여실적
  -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 혁신 등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노력
  -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기여 실적
  -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 연장 등 함께 일하기 추진실적
  - 임금피크제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 \* (예) 임금피크제 도입, 호봉제 폐지 및 성과급제(직무·성과급) 도입 등
  - 외국인 투자유치 등 일자리 창출 기여 실적
  - 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고용·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 제도발전 기여실적
  - 현장근로자의 고충상담·처리 등 근로자 보호에 노력한 실적
  - 사회적 책임\* 확산 실적 및 사회공헌도 등
    - \* 비정규직·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등
- ※ 유의사항: 근로자의 날 포상은 개인유공 기준이므로 공적기재 시 본인의 활동과 무관한 사업장 전체의 공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 재직기간 및 가·감점기준: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훈령)
  - 재직기간
    - 기준일: 추천기준(마감)일
    - 수상자가 실제로 수공(재직)한 기간(수개의 기업·단체에서 수공한 경우 합산)



- 가점기준

- 현장직: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의 생산현장에 근무 중인 자(사무직 제외)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지체·청각·언어·신장·간·안면·장루 및 요루 장애 2급 이상,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 및 팔 장애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자

-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따름
- 감점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을 경우 1점 감점

< 포상대상자별 심사기준 >

포상대상자	항목별 심사기준				가 점 (최고 7.5)
	계	재직기간 (50점)	공 적		
			50점	평가 요소	
근로자	100점	재직년수× 2.0점	·세부 심사 지표에 따라 심사	·불임 1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직 (2.5)</li> <li>▪ 여성 (5.0)</li> <li>▪ 중증 장애인 (5.0)</li> <li>▪ 경증 장애인 (2.5)</li> <li>▪ 중소기업 (2.5)</li> <li>▪ 노사문화우수기업 (2.5)</li> </ul>
노조간부	100점	상동	상동	·불임 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5.0)</li> <li>▪ 중증장애인 (5.0)</li> <li>▪ 경증장애인 (2.5)</li> <li>▪ 노사문화우수기업 (2.5)</li> </ul>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공무원 노사관계발전유공자	100점	상동	상동	·불임 1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5.0)</li> <li>▪ 중증장애인 (5.0)</li> <li>▪ 경증장애인 (2.5)</li> </ul>

- \* 수공기간 최저 요건: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2. 재 포상 금지기간(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 훈·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없음

\* 재 포상 금지기간의 기산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3. 분야별 포상 추천 제한 기준(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 '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변경된 내용은 추후 별도시달

### 가. 일반국민 포상

####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을 경우 1점 감점

####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 제한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의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우리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두 경우에도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④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자 등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포상추천일 이전 청산한 경우는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⑥ 기 포상수상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자의 날 포상 관련으로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동일한 공적으로 재차 포상대상으로 추천된 자

⑦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의 후 순위자
  -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거나, 최소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한정
- 포상 대상별 포상자격 기준에 맞지 않게 추천된 자
  - \* ①사용자(사업주 외에도 공장장, 점장 등 조직단위 최고책임자로 해당 조직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 등)를 근로자로 추천한 경우 ②노조간부를 근로자로 추천한 경우 포상추천 제한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대표자
  - \* 포상 추천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날 포상이 확정된 후 수상을 포기한 자 (3년간 추천 제외)

나. 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②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④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⑤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의 임원
  -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공공행정기관의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우리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자 등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되거나 포상추천일 이전 청산한 경우는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⑦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의 기관장
  - \* 포상 추천일 이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 ⑧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4. 대상별 포상자격: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훈령)

##### 가.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대 상	요 건	기준일
국내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0세 이상</li> <li>▪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li> </ul>	'15.12.31
근로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0세 미만</li> <li>▪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li> </ul>	'15.12.31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재직</li> </ul>	'15.12.31

\* 우리부 공무원은 연말 노동행정유공 종합 표창 시 포상 실시

##### 나. 노동조합 간부

-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합리적 임금개편,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및 비정규직 등의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노동개혁 실천 및 확산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등에 기여한 자로서
- '15.12.31 현재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간 이동은 같은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봄
- \* 재직기간에는 서류상 확인된 전 직장 근무기간과 현 근로자 재직기간 모두 포함

##### 다. 해외근무자

- '15.12.31 현재 해외 근로현장(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라.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15.12.31 현재 노동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

## V. 포상대상자 추천

### 1. 추천인원

- '16년 포상규모 및 결격 사유자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추천인원은 총 253명(포상인원의 120% 이내)으로 함
  - \* 추천인원은 전체 포상규모의 1.2배 이내로 하되, '15년 포상추천 및 수여현황 등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추천인원수를 적정 배분
- 포상인원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구 분	계	근로자				노조 간부	해 외 근무자	노사관계 발전유공자
		소계	국내근로자	근로청소년	공무원			
'16년 추천인원	253	206	182	8	16	25	10	12
'15년 포상현황	211	169	161	3	5	30	5	7

### 2. 추천기관

-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적극 발굴, 추천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연합단체(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 포함)에 소속 또는 파견된 노동조합간부는 연합단체의 몫으로 추천하고,
  - \* 단위노조(산업별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포함)와 연합단체 직책(비상근)을 겸직하는 노동조합간부는 단위노조의 몫으로 추천해야 함

구 분 대 상	대 상 자	접 수 기 관	추 천 기 관
근로자	국내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근로청소년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시·도 공무원	시·도지사	
노조간부	연합 단체	고용노동부(노사관계지원과장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단위 노조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해외근무자	근로자	주재국 공관장	
노사관계 발전유공자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 이외에, 고용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 추가 선발(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10조제3항)

### 3.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 가. 총괄

구분	추천인원	추천기관
총인원	253	
근로자	206	
· 국내근로자	182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 근로청소년	8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 공무원	16	시·도지사(16개)
노조간부	25	
· 단위노조·지역연합단체	16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 상급연합단체	9	고용노동부 본부(노사협력정책관)
해외근무자	10	주재국 공관장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12	
· 지방	8	지방고용노동청장·대표지청장
· 본부	4	고용노동부 본부(노사협력정책관)

#### 나. 기관별 추천인원

##### ○ 본부

구분	노조간부(상급연합단체)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총인원	9	4
노사협력정책과	-	4
노사관계지원과	8	-
공무원노사관계과	1	-

#####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구분	계	국내근로자	근로청소년	노조간부 (지역·단위노조)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
총인원	214	182	8	16	8
서울청	54	49	1	3	1
중부청	24	20	1	2	1
부산청	33	29	1	2	1
대구청	20	16	1	2	1
광주청	22	18	1	2	1
대전청	21	17	1	2	1
경기지청	32	28	1	2	1
강원지청	8	5	1	1	1

\* 지역연합단체 노조간부는 해당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발굴·추천



○ 시·도

구 분	공 무 원	총인원
16개 시·도	각 1	16

\* 지역연합단체 노조간부는 해당지역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을 통해 추천

○ 해외공관

-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이 많은 국가 중 개발도상국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 나라 위주로 추천기관을 늘리어 참여 기회 부여

총인원	해당 국가명	해당 인원
10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 러시아	각 1 (국가별)

\* 해외진출기업이 많은 국가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몽골, 러시아, 멕시코(15.6월 기준,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 '15년: 추천대상국(인도네시아, 멕시코, 일본, UAE, 베트남)에서 5명 추천, 전원 수상

#### 4. 국민추천제 실시

-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국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포상 운영**(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 국민추천에 의한 추천서 접수를 위하여 포상계획 안내문 발송·홍보를 통해 국민추천제도 안내 및 홈페이지 등에 국민추천서 게재

\* 국민추천서는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별지 제1호의 포상대상자 추천서 활용

- 국민추천제 안내·홍보 시 접수기관의 우편주소 및 담당자 e-mail 주소를 안내하여 국민추천 활성화 도모

\* 안내 시 각 기관별로 추천대상자 요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국민추천인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

\* 자기추천 또는 소속 직원 추천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대상자의 공적 직접 조사 등 포상의 신뢰성 확보

## 5. 추천 시 제출서류

-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한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포상대상자 추천서,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 \* 접수기관에서 추천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식상의 '추천순위'를 '연번'으로 하여 작성·제출
  -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 포상대상자 이력서
    - \* 경력란에는 현 소속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증명서, 4대 사회보험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하여 기록하고 인정
  - 피 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 위의 서류를 저장한 이동식 저장매체
-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작성 시 개조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실적 등을 포함한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

### < 바람직한 공적개요 작성 예 >

추천 순위	성명 (한자)	소속	직 책	생년월일 (성별)	재직 기간	공 적 개 요 (예시)
						<p>○ '00년 00를 생산하는 00업체에 입사후 성실히 근무하여 00년 생산반장으로 승진하였고, ISO 9000 인증을 주도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또는 분사에 따른 고용불안 등 어려움속에서 노사분규 타결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에 크게 기여</p> <p><b>※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b></p> <p>○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00부터 00동안 연 10건의 제안활동을 통한 00백만원의 원가절감 및 현장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00공정 작업매뉴얼을 만드는 등 기술전수에 노력</p> <p>(또는 '00년 임단협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T/F 구성 및 근로시간 축소(44시간→40시간)와 정년 연장(56세→60세) 합의 등)</p>

추천 순위	성명 (한자)	소속	직책	생년월일 (성별)	재직 기간	공 적 개 요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생산반장으로 재직시 품질분임조 운영을 통해 분임원들과 ○○공정의 ○○작업방식을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적용함으로써 ○○년 생산시간 ○○시간 단축, 원가절감 연 ○○백만원 달성에 기여</li> <li>(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직무급 연봉제를 도입, 시행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기여)</li> <li>※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3개이내)을 되도록 계량적으로 기술</li> <li>○ 기타 조직화합, 사회봉사,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li> </ul>

※ 계량적인 내용이 없이 아래와 같이 추상적인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 지양 (이 경우 보완토록 조치)

- \* △적극적인 사고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에 기여 및 고객만족 실천 △원만한 대인관계 및 동료애 실천 △직장의 안전한 평화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육성 하는데 기여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 실시 등

## 6. 추천 시 유의사항

- 적격자가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포상계획, 대상자 추천절차 등을 적극 홍보
  - \*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포상계획 및 대상자추천 관련사항 게재, 각종홍보물 배포 및 부착,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
- 노동개혁,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추천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일반근로자 위주로 산업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 추천
  - \* 관내 노사단체 외에 자치단체,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현장의 숨은 유공자 발굴
- 현장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거나, 여성·근로청소년·장애인으로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적극 발굴
  - \* 근로자 추천 시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50% 이상 추천

-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배려와 협력을 통해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등 노동개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노조간부 발굴
  - \* 노조간부 추천 시 나누어먹기식 추천 지양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격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 노조간부 또는 사용자를 근로자로 추천하거나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불임 5 정부포상 신청자격 확인결과(양식) 활용
  - 또한, 일부 직·업종에 편중된 추천을 지양하고, 직종별·업종별·사업체별 전체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포상기회 제공
    - \* 동일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하거나 '15년도 수상자를 배출한 사업장 근로자를 '16년에도 추천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
- 추천 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를 확인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 포상후보로 확정된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훈령))됨을 사전에 고지
-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아래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준수
  - \* 추천서 접수(2.2까지), 추천(접수)현황 통보(2.3), 추천기한(2.17)
  - \* 공적이 특히 뛰어난 경우 외에는 배정인원을 초과한 추천 지양

## VI.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

### 1. 포상대상자 확정

- 포상제외자 및 포상규모 확정
  - 범죄경력 등 각종 조회결과에 의거 포상제외자를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협의 등을 통해 포상규모 및 훈격 확정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후보자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별 훈격 및 추천순위 결정
    - \* 고용노동부 인사운영규정(훈령제48호) 제7장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차관)를 구성·운영
    -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민간심사위원 50%이상 포함·운영(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 포상후보자 추천 및 확정

- 포상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 **포상예정일 35일전까지** 행정자치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예정일이 속한 분기의 전 분기까지 행정자치부와 포상규모를 별도 협의
- 포상후보자는 차관회의·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2. 포상실시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계획에 따라 포상 및 전수 실시

Ⅶ. 향후 추진일정

내 용	추진일정	담당기관(유관기관)
'16년도 포상계획 수립·시달	'16.1월 초	고용노동부(본부)
포상계획 안내·홍보	'16. 1월 초	접수·추천기관
포상대상자 추천서 접수	'16.2.2일까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본부)에 추천(접수)현황 통보	'16.2.3일까지	추천기관
고용노동부(본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16.2.17일까지	추천기관
포상규모 협의	'16.2월 말	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각종 조회결과 확인 및 자료준비	'16.2월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공표 조회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거래법 위반 조회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조회		근로기준정책관 지방고용노동관서
- 장애인고용 저조 공표사업장 조회		고령사회인력심의관
- 범죄경력 조회		근로기준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포상경력 조회		행정자치부
포상후보자 선정	'16.3월 중순	고용노동부(본부)
- 공적정리 및 심사·평가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공개검증 실시	'16.3월 중순	고용노동부(본부)
행정자치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16.3월 말	고용노동부(본부)
포상실시	'16.4.29	

\*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 근로자의 날 유공자 심사기준(근로자 등)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재직기간 (공적기간) (50)	○ 당해 분야에 종사·활동한 경력 년수	50	재직년수×2.0점 (최대 50점)
업적도 및 기여도 등 (50)	○ 심사대상자(개인) 공적이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5	심사자 점수부여
	○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	10	심사자 점수부여
	○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친절 봉사 등 고객 만족도 제고 실적	10	상 동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노동개혁 실천 및 확산 노력 등에 기여한 정도	2.5	상 동
	○ 노사관계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참여 및 기여한 정도	2.5	상 동
	○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5	상동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참여 및 기여한 정도	5	상 동
	○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참여 및 기여한 정도	5	상 동
	○ 사회공헌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 실적	2.5	상 동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제도, 사회 및 기업 운영 등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2.5	상 동
합 계		100	
가·감점	①현장직(2.5), ②여성·중증 장애인(5), 경증 장애인(2.5), ③중소기업(2.5), ④노사문화 우수기업(2.5) ⑤벌금형(-1)		

## 근로자의 날 유공자 심사기준(노조간부)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재직기간 (공적기간) (50)	○ 당해 분야에 종사·활동한 경력 년수	50	재직년수×2.0점 (최대 50점)
업적도 및 기여도 등 (50)	○ 심사대상자(개인) 공적이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5	심사자 점수부여
	○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	2.5	심사자 점수부여
	○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친절 봉사 등 고객만족도 제고 실적	2.5	상 동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노동개혁 실천 및 확산 노력	2.5	상 동
	○ 노사관계제도의 현장정착 노력	2.5	상 동
	○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	7.5	상 동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추진 실적	5	상 동
	○ 임금피크제 등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노력	5	상 동
	○ 외국인투자 유치 등 일자리창출 기여 실적	5	상 동
	○ 현장근로자의 고충상담, 처리 등 근로자 보호에 노력한 실적	2.5	상 동
	○ 산업재해예방 등 제도발전 기여실적	2.5	상 동
	○ 사회적 책임 확산 실적 및 사회공헌도 *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지역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5	상 동
○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제도, 사회 및 기업 운영 등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2.5	상 동	
합 계		100	
가·감점	①여성·중증 장애인(5), 경증 장애인(2.5), ②노사문화 우수기업(2.5) ③벌금형(-1)		

<붙임2>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한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근로기준법 관련 제한 규정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 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

##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정	1993. 8.11.	노동부훈령 제369호
개정	1995. 6. 7.	노동부훈령 제402호
개정	1996. 2.14.	노동부훈령 제414호
개정	1997. 1.15.	노동부훈령 제443호
개정	1997.12. 6.	노동부훈령 제460호
개정	1998.12. 1.	노동부훈령 제485호
개정	1999.12. 8.	노동부훈령 제508호
개정	2000.12. 1.	노동부훈령 제526호
개정	2001.12. 5.	노동부훈령 제539호
개정	2004.11.24.	노동부훈령 제585호
개정	2006.12.18.	노동부훈령 제633호
개정	2008.12.30.	노동부훈령 제682호
전부개정	2012. 1. 4.	고용노동부훈령 제 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날 포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자) 포상대상자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 노사관계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내근로자: 추천일 현재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근로청소년: 추천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노동조합간부: 추천일 현재 연합단체 또는 같은 단위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만,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간에서의 이동은 같은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해외근무자: 추천일 현재 해외 근로현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공무원: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노사관계발전유공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추천일 현재 노동관계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4조(포상종류) 포상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장·포장
2.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3.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제5조(포상계획의 수립·안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포상을 위해 추천기관 관할구역내의 근로자 수·사업체 수·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한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추천절차 등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격자가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포상계획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포상대상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2항에 따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포상대상자별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포상대상자 발굴 등) ①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은 제3조에 따른 적합한 포상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장애인·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포상대상별 추천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접수기관별로 배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접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별 추천인원수는 접수기관별 근로자 수·사업체 수·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접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접수(정보통신망에 따른 접수를 포함한다)받아 접수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기관과 추천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자체공적심사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접수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3.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상자 이력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피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다만, 피추천자가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저장한 이동식 저장매체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추천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서가 접수되면 지역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 이상이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한 후 포상대상별 추천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 소속 지청장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장으로 한다.

③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별 추천순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2. 제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제8조(심사기준) 추천기관에서 포상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2의 포상대상자 공적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사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추천일 현재 소속 사업장 재직기간 및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산정. 이 경우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이력 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정한다.
2. 공적: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사회적 책임이행 등’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공적점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다만,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점수만을 제외한다.

제9조(추천제한 등) ① 추천기관은 같은 사업장에서 2명 이상 추천되거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노동조합간부가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내근로자의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일 이전 5년 이내에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추천일 이전 2년 이내에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3. 제10조에 따라 포상후보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상을 포기한 사람. 이 경우 3년간 추천에서 제외한다.

제10조(포상후보자 결정) ① 포상훈격별 후보자 및 그 순위는 「고용노동부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대상별·훈격별 포상후보자순위 명부를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는 포상후보자순위명부 작성 시에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적이 뛰어나거나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를 추가로 선발하여 포상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상대상자별 접수기관 및 추천기관

대 상 \ 구 분	포상대상자	접수기관	추천기관
근로자	국내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
	근로청소년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
	공무원	시 · 도지사	
노동조합간부	연합단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단위노조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시 · 도지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  시 · 도지사
해외근무자	근로자	주재국 공관장	
노사관계발전유공자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연합단체(전국규모 산업별 단위노조 포함)에 소속 또는 파견된 노동조합 간부는 연합단체의 몫으로 추천하고, 단위노조(산업별 연합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포함)와 연합단체 직책(비상근)을 겸직하는 노동조합 간부는 단위노조의 몫으로 추천해야 함

## 포상대상자 공적심사기준

포상대상	계	재직기간	공적	가점·감점
근로자	100점	50점	50점	① 현장직(2.5) ② 여성·중증 장애인(5), 경증 장애인(2.5) ③ 중소기업(2.5) ④ 노사문화 우수기업(2.5) ⑤ 벌금형(-1)
		재직년수 × 2		
노동조합간부	100점	50점	50점	① 여성·중증 장애인(5), 경증 장애인(2.5)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2.5) ③ 벌금형(-1)
		재직년수 × 2		

※ 가점은 대상별 가점항목(①·②·③·④)별 점수를 각각 부여하되 최대 7.5점을 부여하고, 감점은 최근 2년이내에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을 경우 1점을 부과

※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노사관계발전유공자, 공무원은 공적내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

## 훈격별 후보자 명부 작성기준

훈 격	후보자 선정	비 고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수공기간 1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수공기간 10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수공기간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수공기간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행정안전부 포상 추천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포상 추천기준을 적용함

## 포상대상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포상 대상자	성명(한자)		
	소속	업체명(노조명)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인	성명(한자)		
	소속	업체명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사유			

상기인을           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접수기관의 장 귀하



##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추천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시장·도지사)

추천 순위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별	합 계	재직기간 점 수	공 적 점 수	가 점	감 점
1									
2									
3									
4									
5									
6									
7									
8									
9									
10									

※ 근로자·노동조합간부 구분 작성

##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직위

성명

직인

주요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월일)	포상종류
. . .	
. . .	

공적내용

(서술식을 기재하되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통계 및 실적 기재)

<총괄(예시)>

〇〇년 입사, 〇〇년 〇월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〇〇년 〇월 제약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55세→57세)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 '〇〇년 〇월 무재해 10배수 달성, '〇〇년 노동조합 출범이후 38년간 무분규 유지, ... 등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함

<세부 추진실적>

1. 공적정도(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 정도)
2. 노사화합 선언,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작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여 실적
3. 품질개선, 서비스향상, 친절봉사 등 고객만족도 제고 실적
4.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혁신 등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노력 및 실적
5. 노사관계제도의 현장정착 노력 및 실적
6.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노력
7.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

8. 합리적인 임금개편 노력

9. 외국인 투자유치 등 일자리창출 기여 실적

10. 현장근로자의 고충상담, 처리 등 근로자보호 노력 및 실적

11. 산업재해예방 등 제도발전 기여실적

12. 사회적책임확산 실적 및 사회공헌도

13.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제도, 사회 및 기업운영을 등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정부 주요정책 추진실적>

14-1.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실적

14-2. 비정규직,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실적

14-3.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실적

14-4.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 60세 연착륙 기여 실적

14-5.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생산성 향상 실적

##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

(포상대상: \_\_\_\_\_ )

추천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시장·도지사)

추천 순위	성 명 자 (한 자)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성 별)	재직기간 (공적기간)	공적개요

※ 작성요령: 포상대상은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제3조 각 호의 대상별로 구분 작성

##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포상대상자 인 적 사 항	소속		직책	
	성명		재직기간 (공적기간)	

조사사항	조사결과

종합의견

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포상대상자 이력서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휴대폰)		
소속기관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경 력 사 항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 소속 사업체 개요

피추천자	성명(한자)	
소 속 사업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규모(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 수	
	업종(생산품목)	
	설립일자	
	외투기업(유무)	
노동조합	명 칭	
	상급단체	
	대 표 자	
	조합원 수	
	설립일자	
	임<단>협 만료일	
노사분규 유무		년(유 · 무),      년(유 · 무),      년(유 · 무)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함



<붙임4>

국민추천서 작성요령

- 근로자의날 포상규정(훈령) 별지 제1호 서식(포상대상자 추천서)을 이용하여 작성
- 피추천인이 소속된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의 명칭과 소속 사업장(또는 노동조합)에서의 직위를 기재
- 전화번호와 주소는 피추천인이 소속된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의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
-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는 피추천인 개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도 기재
- 피추천인(포상대상)의 성명,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주요 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붙임5>

## 정부포상 신청자격 확인 결과

○ 일반사항

연번	대상자명	제외사유 해당여부							기타 <sup>※</sup>
		벌금형이상 처분	공정거래 법위반 여부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 명단 사업장 공표장 임원 여부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여부	최근 연속 의무 미달 공표 기관의 여부	2회 장애인 고용 명단 공표 여부	사회적 물의를 포상 부적합 여부	

1) 최근 5년 이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았거나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이미 받은 훈장으로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없는 자

2) 정부포상 종류를 불문하고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장 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최근(3년 또는 5년) 기업단위 과업 등의 발생, 조직  
변동(상급노조 탈퇴, 무노조 전환 등) 등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요인  
유무 등

○ 기타 당해연도 임·단협 타결 여부 및 전망 등

조사자	근로감독관	(인)
확인자	과장	(인)

##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본방침

### 가.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 문화 정착

- 포상대상(분야)의 전반적 성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

### 나. 「계획포상제\*」 및 「포상총량제\*\*」 운영을 통한 포상규모 적정성 유지

\*유사·중복되는 포상을 방지하고, 정부포상의 계획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초 당해연도 ‘정부포상 대상’ 결정 및 포상예정일이 속한 분기의 전 분기까지 행정자치부와 ‘포상규모’를 협의하여 확정하는 제도

\*\*포상총량제 범위내에서 운영(연간 포상총량 기준: 2010년도 포상규모)

### 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역량 강화

- 노동시장 개혁,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 연계, 이웃에 대한 봉사과 선행을 실천한 유공자, 국익을 증진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 적극 발굴 추천

### 라.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 사회 각 분야의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 추천  
\*기관의 최고경영자 임원 등 상급직위자 위주로 추천하는 관행 지양

### 마. 국민중심의 정부포상 운영

- 상훈포털, 전자메일, 우편 또는 기관방문 등을 통해 상시 추천 접수

### 바.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공적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현지실사, 공개검증, 공심위의 구성과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사. 수상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 수상자를 각급기관 단체 등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 실시